

# 회사소개

# NVW % NVW

남앤드남인터내셔널㈜는 1952년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 Law Firm인 남앤드남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환경컨설팅 전문 자회사입니다.

당사는 지난 2008년 봄 역외기업의 EU REACH 대응서비스를 주요 사업분야로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 120개사의 고객을 대리하여 2000여종 물질의 사전등록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등 선도적인 REACH 대응 컨설팅회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재 남앤드남인터내셔널은 REACH뿐만 아니라, 국내 5대 교역국인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대만을 비롯하여 기타 국가들의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화학물질 관리 자문, 제품별 규제 대응서비스 및 이 외의 환경규제 자문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500여개의 기업 고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고객



# NAM&NAM International

### 남앤드남 인터내셔널(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빌딩 3층

Tel: 02-779-5477 Fax: 02-753-5279

이메일 : info@namandnam.com 홈페이지 : www.namandnam.com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수정되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화관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화관법 대응 서비스

- ▶ 화관법 최신동향 제공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작성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업무(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 ▶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 ▶ 유해물질 운반계획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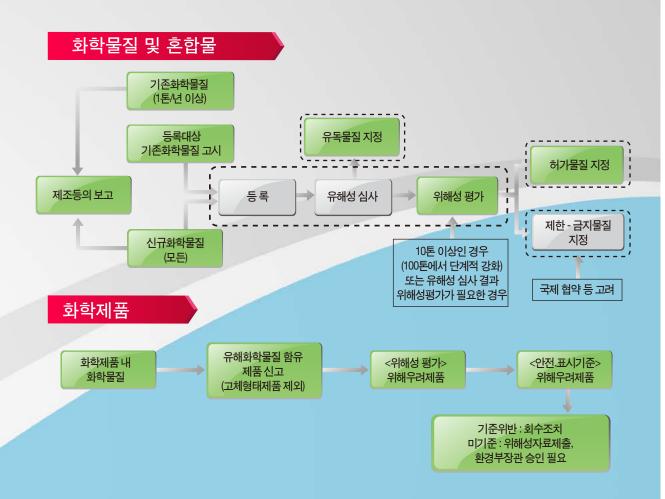




#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에 따르면 신규물질은 톤수 관계 없이 무조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은 유럽의 REACH와 동일하게 일부 기존 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화평법 대응 서비스

남앤드남은 다양한 유럽 REACH 대응을 경험으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화평법 최신동향 제공
- ▶ 신규물질 및 등록대상 물질 등록
- ▶ 동일물질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대리 수행
-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 ▶ 시험항목 검토 및 모니터링
- ▶ 등록자료 구매 협상 및 대행
- ▶ 해외 제조자의 대리인 서비스





# 국외 화학물질 규제대응

화학물질 등록 <u>절차</u>

>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

심사<del>종류</del> 확인 (면제 포함) 시험진행 또는 보유시험자료 적합성 검토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심사 완료

국가별 규제 대응



미국

-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에 따라 규제됨
- PMN, SNUR 등 신고 자문 및 대행



일본

- 화심법(CSCL)/안위법(ISHL)에 따라 규제됨
- 소량신고, 정식심사, 고분자심사 등 신고 자문 및 대행



중국

-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됨
- 연구개발신고,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 신고 자문 및 대행



대만

- 직업안전위생법(OSHA)에 따라 규제됨
- 고지, 간이신고, 정식신고 등 신고 자문 및 대행



유럽

-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에 따라 규제됨
- REACH 사전등록, 본등록 자문 및 대행



기타

•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기타 국가 컨설팅



# EU REACH 대응

### 남애드남유럽은

선진적인 유럽 환경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럽 현지에 설립된 남앤드남인터내 셔널의 해외법인으로써 EU REACH 대응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REACH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제 내용 및 관련 정보를 현지에서 빠르게 입수하여 국내 산업계의 대응 방향 및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유럽 현지 법인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특징으로 하는 밀착형 자문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국내외 사업주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습니다.

### 제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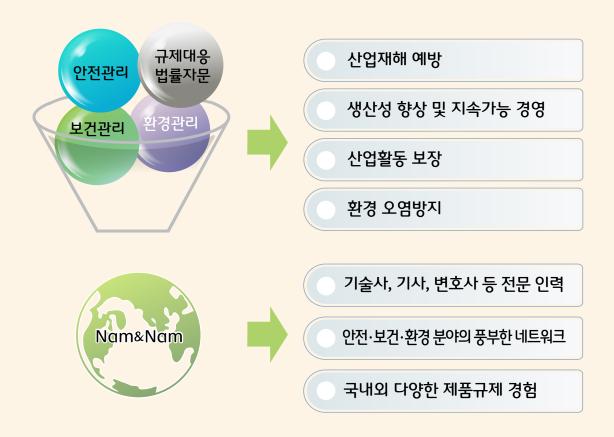
- ▶ REACH 최신동향 제공
- ▶ REACH 사전등록, 등록, 신고 및 허가
- ▶ 대상물질 확인 및 갭(gap) 분석
- ▶ SIEF 활동 및 자료공유(Data sharing)협상
-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TD/CSR)
- ▶ eSDS(extended Safety Data Sheets) 작성
- Nam & Nam Europe GmbH 유일대리인 서비스
- ▶ 제 3자 대리인(TPR) 서비스
- ▶ 법률 자문 서비스

### 성공적인 REACH 등록 실적

- ▶ 120개 기업 약 2000여종의 물질 사전등록 완료
- ▶ 국내 최초. 최다 REACH 본등록 성공적 등록
- ▶ LG화학, 포스코, 국도화학, SK, KCC, 제일모직, 코오롱 등 70여종 본등록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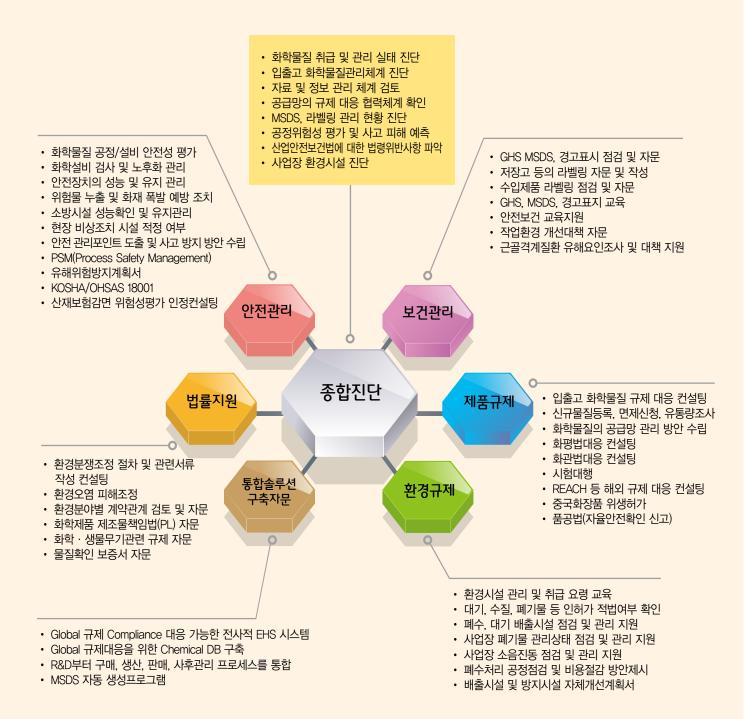
- ▶ 최근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의 중대 산업 사고로 인하여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업장 자체진단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 ▶ 남앤드남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 진단에서부터 유해물질규제대응 방안 수립까지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이 원활한 산업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합니다.



남앤드남은 다수의 안전·보건 교육과 현장진단 및 지도 경력을 지닌 분야별 전문인력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화학물질 규제 대응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규제대응 맞춤형 서비스



### 남앤드남 인터내셔널(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빌딩 3층

Tel: 02-779-5477 Fax: 02-753-5279 이메일: info@namandnam.com 홈페이지: www.namandnam.com



CAS 번호는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로서 미국 CAS (Chemical Abstract Service)사에서 부여하는 고유 숫자 식별자입니다. 각 번호는 하나의 특정화학물질만 나타내며, 특히 당사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할 시물질 자체의 고유성과 규격화를 위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AS 등록 홈페이지



▶ CAS 제출 서류 예시

### CAS 등록 대응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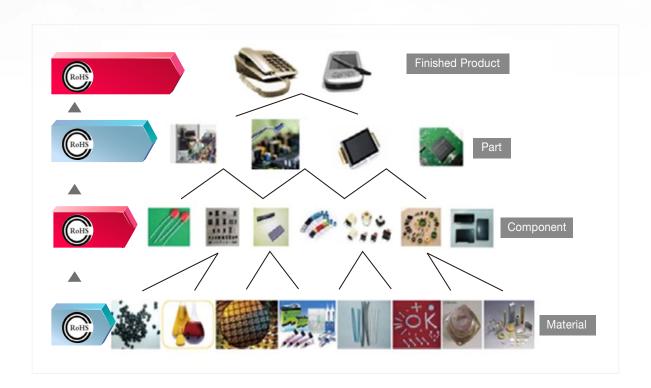
- ▶ 물질정보확인 : 해당 물질의 CAS 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
- ▶ 미국 CAS 사 Chemists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해외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제출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신속히 대응 및 처리
- ▶ 등록 서류 준비 및 보완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완성도 있는 서류 작성
- ▶ 할당된 CAS 번호로 국내 외 신규물질 등록 업무 연계



# China RoHS

### 개 요

- ▶ 2006년 3월 2일 발표된 정보전자제품 오염방지관리법에 따라 중국영토내에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모든 전자정보 제품은 환경친화적 사용기간, 유해물질 이름, 함량, 유해물 질 포함부품, 유해물질 재활용 정보 및 재활용 가능율을 표시하도록 강제됨
- ▶ 2010년 8월 26일 중국공업정보화부(MIT)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기존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에서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으로 변경, RoHS 강제인증 전단계로 자발적인증제도인 SRVC가 우선 시행됨
- ▶ China RoHS 개정판은 직류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에서 작동되는 전기전자 제품으로 대상범위가 확대, 6대 완제품(이동단말기, 유무선 전화기, 컴퓨터, TV, 프린터 및 모니터) 및 이 제품들에 사용된 소재, 부품 및 스페어파트가 인증대상



### 인증취득 기대효과

- ▶ 재정 및 세금혜택
- ▶ 정부 구매 입찰 우대
- ▶ 폐기물 부담금 감면
- ▶ 국제 상호 인정
- ▶ 제품의 신뢰 및 이미지 제고
- ▶ CCC 강제성 인증 전환
- ▶ 사후 감독관리 샘플링 확률 저감

### 컨설팅 추진범위

- ▶ 중국 지정 시험기관과 업무협약체결
- ▶ 대응비용 경감 및 인증취득기간 단축
- ▶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 자문 및 대응
- ▶ 화학물질 전반적인 상시 자문 수행



# GHS/CLP/MSDS

### 국가별 시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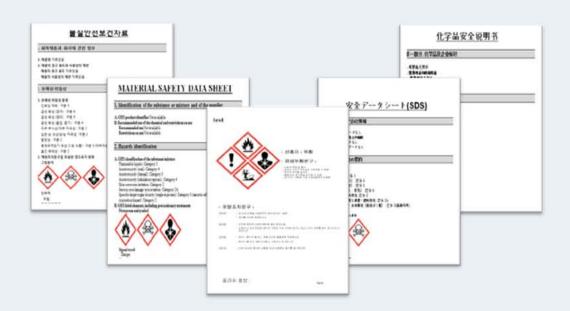
- ▶ UN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2008년까지 GHS 시행할 것을 권고
- ▶ **한국** : 단일물질은 2010년 7월(단, 유독물은 2011년 7월), 혼합물질은 2013년 7월시행
- ▶ E U :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 혼합물질은 2015년 6월 시행
- ▶ **일본** : 경고표지 104종 (2008년 11월까지 완료), MSDS 700여종 (2011년 1월부터 시행) SDS/경고표지: 2012년 4월부터 JIS Z 7253-2012(GHS 4차 개정판 반영) 이행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수)
- ▶ 미국 :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2015년 6월 시행
- ▶ 대만: 2008년 12월 31일부터 우선순위물질별 시행 (1순위물질(1062종): 2009년 12월까지 이행, 2순위물질(1200종): 2011년 12월까지 이행, 3순위물질(1000톤): 2013년부터 시행, 모든 물질 2014년까지 이행해야 함)
- ▶ 중국 : SDS는 2010년 5월, 경고표지는 2011년 5월 단일물질/혼합물 모두 2011년 5월 시행(2011년 12월부터 처벌)

# 업무절차 GHS/MSDS 상담 \*\* GHS 분류 및 (M)SDS 작성 \*\* GHS 분류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 (M)SDS 번역 및 검토 \*\* (M)SDS 형식 변환 \*\* (M)SDS 프로그램 \*\* C&L 신고 \*\* GHS&(M)SDS 교육 및 세미나



# (M)SDS - Pro

▶ SDS-Pro는 GHS 대응의 (M)SDS 자동 작성/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다국어 MSDS 자동화

MSDS 기본문구 자동 생성

혼합물 MSDS 쉽게 생성 가능

경고표지 규격별 생성/출력

물질별 국내·외 법적규제 파악 용이



# GHS/CLP/MSDS



- ▶ UN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2008년까지 GHS 시행할 것을 권고
- ▶ **한국** : 단일물질은 2010년 7월(단, 유독물은 2011년 7월), 혼합물질은 2013년 7월시행
- ▶ E U :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 혼합물질은 2015년 6월 시행
- ▶ **일본** : 경고표지 104종 (2008년 11월까지 완료), MSDS 700여종 (2011년 1월부터 시행) SDS/경고표지: 2012년 4월부터 JIS Z 7253-2012(GHS 4차 개정판 반영) 이행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수)
- ▶ 미국 :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 2015년 6월 시행
- ▶ 대만 : 2008년 12월 31일부터 우선순위물질별 시행 (1순위물질(1062종): 2009년 12월까지 이행, 2순위물질(1200종): 2011년 12월까지 이행, 3순위물질(1000톤): 2013년부터 시행, 모든 물질 2014년까지 이행해야 함)
- ▶ 중국 : SDS는 2010년 5월, 경고표지는 2011년 5월 단일물질/혼합물 모두 2011년 5월 시행(2011년 12월부터 처벌)

# 업무절차 GHS/MSDS 상담 \*\* GHS 분류 및 (M)SDS 작성 \*\* GHS 분류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 (M)SDS 번역 및 검토 \*\* (M)SDS 형식 변환 \*\* (M)SDS 프로그램 \*\* C&L 신고 \*\* GHS&(M)SDS 교육 및 세미나

# N/M&N/M

# 유해법 & 산안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에서는 국내에서 화학물질이 원활하게 제조 및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규제 대응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에 따르면 신규물질로 판단 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의 4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해법&산안법 대응 서비스

- ▶ 대상화학물질의 신규화학물질 여부 확인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 대상 검토
- ▶ 신규화학물질 시험 관련 전반적인 모니터링
- ▶ 신규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 신청 대행
- ▶ 화학물질 전반적인 상시 자문 수행





# 환경규제교육 및 컨설팅

시시각각 변화하고 늘어가는 환경규제들이 기업들의 높은 비용 및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규제에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남앤드남은 각 고객사들의 기업환경에 맞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교육 범위

# REACH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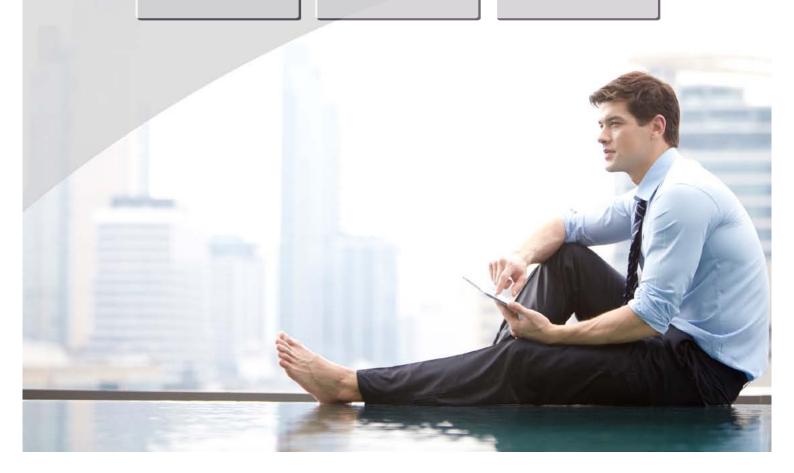
- REACH 제도 및 등록
- 완제품 대응전략

### GHS/MSDS

• GHS 분류에 따른 MSDS작성 사내 실무자 교육

## 국제환경규제

• 최신 국제환경규제의 동향 및 대응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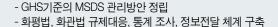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화평법, 화관법 등의 시행으로, 등록 대상물질확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신고, 자료보관의무, 상하위망의 정보전달 등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종래 단위별 개별시스템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솔루션은 패키지 기반의 통합시스템을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R&D부터 구매,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의 프로세스의 통합을 통하여 Global 규제 Compliance 대응이 가능한 전사적 EHS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SAP Solution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 Global규제대응 시스템 SAP-EHS

- 전사적 화학물질관리 조직체계 정립 및 역량 확보
- REACH/RoHS 등 해외규제 대응체계 구축
- 국내 법적규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 Process 정립
- 규제대응 공급망관리 체계 정립



Compliance 규제대응역량확보

### Database/Contents 데이타베이스 구축

- 원부원료/제품 화학물질 유해성DB 구축
- 사용/제조 화학물질에 대한 GHS기준의 MSDS 확보
- Global 규제대응을 위한 Chemical DB 구축 (정기적인 Update)

### Information System 전사적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 고객관리: 고객에게 규제준수에 필요한 적합한 문서 제공
- 부품관리: 설계와 개발단계에 회사 보유 규제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지식을 직접 활용
- 규제준수관리: 규제준수 및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완벽 점검하여 위험 추적하여 사전 제거
-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에 기반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 프로세스통합: 규제준수 및 안전관리 기능을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